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7. 20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경제활력국	고용센터장	양태녕	☎	710-4440
	고용지원팀장	오명자	☎	710-4591

제주도, ‘육아기 10시 출근제’ 문턱 낮춘다

- 근속기간 6개월 요건 전면 폐지...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-
-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... 일·가정 양립 실질적 혜택 -

-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부모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‘육아기 10시 출근제’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.
-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·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.
 -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.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,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예방하며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-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다.
 -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었으나,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

- 또한,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.

기존건		개선(7.1.~)
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	→	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
취업규칙 등에 규정 마련 및 제출 의무	→	권고사항으로 완화

- 현재까지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, 1,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.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.

※ 문의처

제주시: 제주시 중앙로 165, 3층 (☎ 710-4462)

서귀포시: 서귀포시 동홍로 186, 4층 (☎ 710-4491~2)

-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“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일·가정 양립정책”이라며, “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,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‘육아기 10시 출근제’ 지원 개요 1부. 끝.

☐ 도입 배경

-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

☐ 주요 내용

- (지원대상)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, 중견기업 사업주
- (지원요건) ①육아기 자녀(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를 둔 노동자(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)의 신청, ②1일 1시간 단축 허용(1개월이상), ③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, ④출·퇴근 관리(전자·기계적 방식), ⑤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까지)
- (지원금액)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
- (지원기간)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
- (지원규모)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30명) 한도

☐ 제도 개편 사항('26.7.1.~)

- (요건 완화) 노동자의 6개월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(근속 요건 폐지),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
- (서류 간소화)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규정 마련 및 제출 의무를 권고로 완화